

영등포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0.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6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15. 5. 18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 중 고액채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3. 주요내용

-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경우 상위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개정 (안 제8조)
- 나. 재산압류 강행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안 제18조)
- 다. 채납처분의 집행 중지를 공고하는 경우 일간신문 공보 등에 “10일간 공고”에서 “1개월간 공고”로 변경(안 제39조)
- 라. 고액 채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에 따른 조례 신설 (안 제5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4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2015.5.18.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세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¹⁾에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법령체계를 구축 하려는 것임.

1) 제7조(기한연장의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²⁾에서는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 경매, 법인 해산 시에는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변경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압류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체납 지방세를 좀 더 원활하게 징수하려는 것임.
- **안 제39조**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의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공고기간을 10일로 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³⁾에 따라 1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2)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 3)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 안 제53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⁴⁾의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신설 하려는 것이며, 명단공개 기준이 2016.1.1.부터 현행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영등포구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17명에서 509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명, 백만원)

현 행		2016.1.1. 시행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대상자	금 액	대상자	금 액
17	8,510	509	16,737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 하는 간접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근본 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체납징수 조치들이 함께 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고액·상습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망됨.

4)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